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전문위원 함석헌, 쇠영표

I. 선거범죄 양형의 특징

1. 선거범죄의 개념

- ▣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범죄
-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부터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2. 선거범죄 양형의 특성

가. 기본가치에 대한 고려

- ‘정치적 자유’와 ‘공정한 선거’라는 기본 가치의 충돌 영역
- 올바른 국민 의사 반영, 민주주의 확고화를 위한 기본가치의 조화

나. 일반예방의 측면 고려

- 형벌을 통한 규범의식 강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일반예방의 측면이 중요
- 일반예방의 측면을 주로 고려하게 되면 양형인자 중 행위자적 요소보다는 행위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형종 및 형량을 정할 필요

3. 선거범죄 양형의 중요성

가. 선거결과의 변동

-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
- 선거범죄의 유무죄 및 양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나. 국민적 관심

- 선거범죄의 발생과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
- 특히 중요 선거가 몰린 시기에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임

II. 양형기준 설정 범위

1. 선거범죄의 유형

- 공직선거법은 민의 왜곡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에 따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범죄유형 및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
- 선거범죄는 범죄행위의 형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
 - ① 매수 및 이해유도죄
 - ②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 ③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
 - ④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죄
 - ⑤ 선거자유방해죄
 - ⑥ 투표에 관한 죄
 - ⑦ 선거절차법상 각종 제한 위반죄
- 선거범죄를 형사법적 선거범죄와 행정법적 선거범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①~③의 범죄는 형사법적 선거범죄의 대표 유형임

2. 주요 구성요건 및 법정형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일람표

▲ 매수 및 이해유도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매수 및 이해유도	§230①1호	선거인 등에 금품제공	5년 ↓, 1,000만 원 ↓
	§230①2호	기관·단체 등에 금품제공	
	§230①3호	선거구민의 모임 등에 금품제공	
	§230①4호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230①5호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하기 위한 게시 및 전송의 대가로 금품제공	
	§230①6호	제1호~제5호 금품제공 상대방	
	§230②	정당·후보자 및 그 관계인의 제1항 각호의 행위	7년 ↓, 1,500만 원 ↓
	§230③	제1, 2항 각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7년 ↓, 1,500만 원 ↓
	§230④	선거기간 중 금품운반	5년 ↓, 1,000만 원 ↓
	§230⑤	선관위위원·직원 등의 제1, 2항 행위	7년 ↓
	§230⑥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 등	5년 ↓, 1,000만 원 ↓
	§230⑦	당내경선 관련 금품제공 등	3년 ↓, 600만 원 ↓
	§230⑧	제7항 제2, 3호 행위 등 지시·권유·요구·알선	5년 ↓, 1,000만 원 ↓
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231①1호	재산상의 이익 목적, 선거인 등에 금품제공	7년 ↓, 300만 원~2,000만 원
	§231①2호	제1호 대가 등 금품제공	
	§231①3호	제2호 금품제공 상대방	
	§231②	제1항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10년 ↓, 500만 원~3000만 원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232①	후보자에 대한 금품제공	7년 ↓, 500만 원~3,000만 원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이해유도	§232②	제230조 제1항 각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10년↓, 500만 원~3,000만 원
	§232③	선관위위원·직원 등의 제1, 2항 행위	10년↓
당선인에 대한 매수	§233①	당선인에 대한 금품제공	1년~10년
	§233②	제1항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당선무효 유도	§234	당선무효 목적 금품제공 등 유도 또는 도발	1년~10년
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 매수	§235①	방송·신문 등의 경영·관리자 등에 금품제공	5년↓, 1,000만 원↓
	§235②	정당·후보자 및 그 관계인의 전향 행위	7년↓, 2,000만 원↓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기부행위 등 금지제한위반죄	§257①1호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5년↓, 1,000만 원↓
	§257①2호	대담·토론회 관련 기부행위	
	§§257②	기부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기부받는 행위	3년↓, 500만 원↓
	§257③	외국인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행위	3년↓, 500만 원↓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허위사실공표죄	§250①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5년 ↓, 3,000만 원 ↓
	§250②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7년 ↓, 500-3,000만 원
	§250③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 공표	3년 ↓, 600만 원 ↓
		낙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 공표	5년 ↓, 1,000만 원 ↓
후보자비방죄	§251	후보자 비방	3년 ↓, 500만 원 ↓
방송 · 신문 등 부정이용죄	§252①	인터넷 광고금지 위반 / 방송 · 신문 등 광고금지 위반 / 신문 · 잡지 등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 허위논평 · 보도의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 이용의 제한 / 구내방송 등 선거운동 금지	3년 ↓, 600만 원 ↓
	§252②	후보자 방송연설 등의 불공정 중계방송 금지 위반	2년 ↓, 400만 원 ↓
성명 등의 허위표시	§253	성명 등 허위표시 방법 통신	3년 ↓, 600만 원 ↓

▲ 투표에 관한 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사위등재 · 허위날인죄	§247①	사위 선거인명부 등재 / 허위 부재자신고 / 허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특정 선거구 투표 목적 허위 주민등록신청 / 선거인명부 허위 서명날인	3년 ↓, 500만 원 ↓
	§247②	선관위 및 선거 관련 공무원 등의 허위 선거인명부 작성 · 고의누락	5년 ↓, 1,000만 원 ↓
사위투표죄	§248①	사위 방법 투표	5년 ↓, 1,000만 원 ↓
	§248②	선관위 및 선거 관련 공무원 사위 방법 투표	7년 ↓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249①	투표위조 · 투표수 증감	1년 ↑ 7년 ↓
	§249②	선관위 및 선거 관련 공무원 등 투표위조 · 투표수 증감	3년 ↑ 10년 ↓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선거운동기간위 반죄	§254①	선거일 선거운동	3년 ↓, 600만 원 ↓
	§254②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2년 ↓, 400만 원 ↓
부정선거운동죄	§255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선운동의 주체 등 제한 위반 2. 선거운동의 주체 등 제한 위반 3. 선거운동기구 설치 제한 위반 4.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제한 위반 5. 어깨띠 등 착용 제한 위반 6. 연설장소 제한 위반 7. 대담 · 토론회 개최주체 제한 위반 8. 대담 · 토론회 개최비용 제한 위반 9.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 10. 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11.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12. 타후보자 선거운동 금지 위반 13.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위반 15. 영화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 16. 행렬 등 금지 위반 17. 호별방문 제한 위반 18. 서명 · 날인운동 금지 위반 19. 서신 · 전보 등 선거운동 금지 위반 20. 재외선거권자 선거운동 제한 위반 	3년 ↓, 600만 원 ↓
	§255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제한 위반 1의2.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간 제한 위반 1의3. 선전벽보 작성 · 사용 제한 위반 3. 당내경선운동 위반 4. 확성장치 · 자동차 사용 제한 위반 5. 탈법에 의한 문서 배부 금지 위반 6. 녹음기 등 사용 금지 위반 8. 선거에 관한 광고 제한규정 위반 	2년 ↓, 400만 원 ↓
	§255③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지위 이용 경선운동 2.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5년 ↓
	§255④	선거운동정보 전송 제한규정 위반	1년 ↓, 100만 원 ↓
선거범죄선동죄	§259	§230~235, 237을 선동	3년 ↓, 600만 원 ↓

▲ 선거비용부정지출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선거비용부 정지출등	§258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 초과 지출	5년↓, 2,000만 원↓

▲ 선거자유방해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선거의 자유방해죄	§237①	선거 관련인 폭행 . 협박 . 유인 . 체포 . 감금 . 선거 관련 물품탈취 / 선거 관련 집회 . 연설 . 교통방해 . 부정한 방법 선거자유방해 / 피보호자에 대한 선거 관련 지지 . 추천 . 반대 강요	10년 ↓, 500만 원 ↑ 3,000만 원 ↓
	§237②	검사 . 경찰에 의한 §237① 행위	1년 ↑ 10년 ↓ (5년 ↓ 자격정지)
	§237③	연설 . 대담 . 토론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투기 . 후보자 등 폭행	주모자 5년 ↑
			지휘자 3년 ↑
			단순가담자 7년 ↓
	§237⑤	당내경선 후보자 폭행 . 협박 . 유인 . 체포 . 감금 / 경선운동 . 교통방해 . 부정한 방법 당내경선자유 방해 / 피보호자에 대한 당내경선 지지 . 추천 . 반대 강요	5년 ↓, 1,000만 원 ↓
§237⑥	경선운동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투기 . 경선후보자 폭행	주모자 3년 ↑	
		지휘자 7년 ↓	
		단순가담자 2년 ↓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238	군인에 의한 §237① 행위 . 피지휘 군인의 선거권행사 방해	1년 ↑ 10년 ↓ (5년 자격정지)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239	선관위 및 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인명부 열람방해 . 직무유기	7년 ↓
		선관위 및 선거 관련 공무원 . 경찰의 후보자 미행 . 선거사무소 등 침입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239의2①	선장의 선상부재자투표방해	1년 ↑ 10년 ↓
	§239의2②	선상부재자투표 관련 규정 위반	10년 ↓, 500만 ↑ 3,000만 원 ↓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240①	선전시설 설치방해 . 철거 . 훼손	2년 ↓, 400만 원 ↓
	§240②	선관위 및 선거 관련 공무원의 §240①	3년 ↓, 600만 원 ↓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대한 방해죄		행위	
	§240③	선관위 및 선거 관련 직무종사 공무원의 선거우편물 관련 부정행위 . 직무유기	
투표의 비밀침해죄	§241①	투표비밀침해 . 투표마감 전 투표 표시 요구 . 투표소 인근 출구조사	3년 ↓, 600만 원 ↓
	§241②	선관위 및 선거 관련 공무원 . 경찰 . 군인의 §241① 행위	5년 ↓
투표 .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242①	투표방해목적 신분증 유지 . 투표나 개표에 간섭 . 투표소에서 투표 권유	3년 ↓
		거소투표 간섭 . 방해 . 공개	
	§242②	개표소 통신설비 파괴 . 훼손	5년 ↓
	§242③	검사 . 경찰 . 군인의 §242① 행위	1년 ↑ 10년 ↓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242의2①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처리에 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3년 ↓, 600만 원 ↓
	§242의2②	피지휘 공무원에 대한 §242의2① 행위	1년 ↑ 5년 ↓
투표함 등에 관한 죄	§243①	투표함 . 투표지의 훼손 . 은닉 등	1년 ↑ 10년 ↓
	§243②	검사 . 경찰 . 군인의 §243① 행위	2년 ↑ 10년 ↓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 교란죄	§244①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 . 협박 등 / 투표소 . 개표소 등에 대한 소요 . 교란 / 선거사무관리 관련 시설 . 물건 손괴 . 훼손 등	1년 ↑ 10년 ↓, 500만 ↑ 3,000만 원 ↓
	§244②	당내경선에서 §244① 행위	10년 ↓, 2,000만 원 ↓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245①	투표소 . 개표소 . 선관위 사무소 등에서의 무기 . 흉기 등 휴대행위	7년 ↓
	§245②	연설 . 토론장소에서의 무기 . 흉기 등 휴대행위	3년 ↓, 600만 원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246①	다수인의 §243 . §245 행위	주모자 3년 ↑
			지휘자 2년 ↑ 10년 ↓
			단순가담자 5년 ↓
	§246②	§243 또는 §245 행위 목적 다수인의 해산명령 불응	주도자 5년 ↓ 기타 1년 ↓, 200만 원 ↓

▲ 선거절차 관련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각종제한규정위 반죄	§256①	1. 특정단체 모임 개최 금지규정 위반 2. 여론조사 방법 및 여론조사결과 공개방 법 제한규정 위반	3년 ↓, 600만 원 ↓
	§256②	1. 선거운동 관련 가. 현수막 제한 위반 나.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 위반 다. 방송내용 제한 위반 라. 무소속 후보 정당표방 금지 위반 마. 정보통신 이용 관련 요청 불이행 바. 공무원의 선거영향행위 금지 위반 사. 유사기관 활동 제한 위반 아.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 자. 타연설회 등 금지 위반 차. 야간연설 등 제한 위반 카. 각종 집회 등 제한 위반 타. 연설회장 소란행위 등 금지 위반 파. 여론조사 결과공표 등 금지 위반 하. 비교평가결과 공표 제한 위반 거. 의정활동 보고 제한 위반	2년 ↓, 400만 원 ↓
		2. 선거질서 관련 가. 선거인명부 작성방해 금지 위반 나.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금지 위반 라. 참관인 자격 제한 위반 마. 투표소 등 출입 제한 위반 바. 투표소 내 소란연동 금지 위반 사.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금지 위반 아. 개표소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위반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불이행	
		4. 선거범죄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256③	1. 정강 등의 신문광고 제한 위반 2. 정강 등의 방송연설 제한 위반 3. 정강 등의 홍보물 배부 제한 위반 3의2. 정책공약집 배부 제한 위반 4. 정당기관지 배부 제한 위반 5. 창당대회 개최와 고지 제한 위반 6. 당원집회의 제한 위반 9. 정당의 당원모집 제한 위반 10.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제한 위반	2년 ↓, 400만 원 ↓	
§256④	1.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제한 위반 2.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한 위반 2의2. 선거사무소 폐쇄명령 불이행 3.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제한 위반 4. 선거사무원 수 제한 위반 5. 선거벽보 등 수량 제한 위반 6. 선거광고 방법 제한 위반	1년 ↓, 200만 원 ↓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8.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제한 위반 9.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 신고 등 제한 위반 10. 연설 . 대담 녹음 . 녹화 제한 위반 11.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위반 12. 선거범죄 조사 방해	

3.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대상범죄 선정 원칙

- 법률 규정 + 국민적 관심 + 범죄의 발생빈도 + 기준 설정 적합성
- 양형위원회는 제40차 회의(2012. 3. 5.)에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신속하게 설정하여 이번 4·11 총선 선거범죄에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의결
-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범죄발생 빈도가 높으며, 당선 유·무효에 영향력이 큰 선거범죄 유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 **선택과 집중이 필요**

나. 구체적 검토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제230조 ~ 제235조) - 포함

▣ 일반적 검토

-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법정형
- 금권 선거의 대표적인 사례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

▣ 사례가 적은 경우의 구체적 검토

-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당선무효유도죄(제234조)의 경우에는 과거에 선고된 단일범 사건이 없고(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고된 단일범 사건이 전혀 없음),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의 경우에는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고된 단일범 사건이 17건에 불과함

● 검토 - 포함

- 기존에 선고된 사건이 없는 문제가 있지만, 제231조 ~ 제235조는 제230조를 기본범죄로 하므로 그 양형기준을 유추하여 규범적 설정이 가능
- 규범적 양형기준 설정례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있어서 영업비밀 침해 유형 중 ‘국외침해 유형’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제257조) - 포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더불어 금품선거의 대표적인 사례
- 높은 발생 빈도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제250조, 제251조) - 포함

- 허위의 정도나 비방 정도에 따라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
- 혼탁선거를 방지할 규범적 필요성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

4)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254조) - 포함

- 사건 발생빈도가 높고,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음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
-

5)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 포함

-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지 않고, 대상 범죄 유형이 다양함
- 다만 선거범죄 중 가장 빈발하고 있는 범죄로 당선유무효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음
- 원칙적으로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

6)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제258조) - 제외

-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기는 하나, 단일범으로 기소되는 사건 수가 극히 드물고(2006. 1. 1. ~ 2011. 12. 31. 선고된 사건 수가 7건에 불과) 최근 위반사례가 거의 없음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7) 선거자유방해 유형(제237조 ~ 제246조) - 제외

- 상대적으로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높긴 하나, 범죄발생빈도가 낮아 실증적 방법에 의한 양형기준 설정 곤란하고, 규범적 설정을 위한 기본 범죄가 없는 실정
- 상대적으로 사건 발생건수가 많은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240조)의 경우(2006. 1. 1. ~ 2011. 12. 31. 선고된 단일범 사건 수는 32건임)에도 대부분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어 당선 유무효와는 무관한 경우였음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8) 투표에 관한 죄(제247조 ~ 제249조) - 제외

- 상대적으로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높긴 하나, 범죄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실증적 방법에 의한 양형기준 설정 곤란
-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 당선 유무효와 무관한 경우 대부분

-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9) 각종제한규정 위반죄(제256조) - 제외

-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고, 행정법규위반 성격이 강함
- 대상 범죄유형이 대단히 광범위하여 공통된 형량범위나 양형인자의 추출에 난점
- 다른 중요 선거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일범으로서 제256조 위반범죄는 매우 적은 실정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10) 인터넷을 이용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제1항 제5호) - 포함

- ▣ 개정 공직선거법(2012. 1. 17. 시행)의 신설

- ▣ 관련규정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 포함시켜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 2012. 3. 19. 개최된 제51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새로 신설된 범죄 유형이기는 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230조의 다른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

11) 여론조사 왜곡보도 금지 등 위반죄 - 포함

■ 개정 공직선거법(2012. 1. 17. 시행) 신설

■ 관련규정

-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 제96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 여론조사 왜곡보도 금지 유형을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 2012. 4. 2. 개최된 제52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 여론이나 당락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범죄이므로 유사한 행위유형의 양형기준에 포함시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

III. 범죄유형 분류

1. 대유형 분류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섭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함이 타당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

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분류는 단순화할 필요

- 유형별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될 필요

2. 대유형 분류 방안 - 행위 유형에 따른 분류를 채택

가. 내용

- 선거범죄 중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
 - ①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 ②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 ③ 허위사실공포·후보자비방 유형
 - ④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

나. 채택 근거

-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에 행위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범죄의 경중이 정해지므로 대유형 분류의 기본은 행위 유형이 되어야 함
- 범행을 범한 사람의 신분, 범행의 상대방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유형 내 소유형으로 구분하거나 양형인자로 반영
- 행위 유형에 따른 분류가 공통의 양형인자 추출에도 유리

다. 장점

- 공직선거법의 조문체계와 일치
- 양형기준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해당 유형을 찾을 수 있음
- 공통적인 양형인자 추출이 용이

IV. 소유형 분류를 위한 고려사항

1. 방향

-
- 법의 목적, 범죄의 성격, 법정형 및 선고형 분포 등을 고려한 일관된 원칙에 따라 유형 및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
 - 당선무효라는 부가적인 불이익은 실제로는 형벌보다도 더 강력한 효력으로 간주되므로 선고형으로 인한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

2. 당선무효 기준 및 효력

가. 당선인

-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나. 선거사무장 등(이하 ‘선거관계자’ 라고 함)

- 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대상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범죄(제230조 ~ 제234조), 기부행위를 한 죄(제257조 제1항 중)로 인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다. 공무담임권의 제한

- 제230 ~ 제234조, 제237 ~ 제255조, 제256조 제1, 2항, 제257 ~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됨

라.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 당선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 또는 낙선한 사람으로서 자기나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

-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함

3. 양형기초자료 분석결과

가. 종국 내역

단위 : 명, %

적용 법조		선고내역			전체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	
공직선거법(제230조)	수	38	327	267	632
	비율	6.0	51.7	42.2	100.0
공직선거법(제250조)	수	2	14	80	96
	비율	2.1	14.6	83.3	100.0
공직선거법(제251조)	수	0	3	22	25
	비율	0.0	12.0	88.0	100.0
공직선거법(제254조)	수	0	1	93	94
	비율	0.0	1.1	98.9	100.0
공직선거법(제255조)	수	2	38	410	450
	비율	0.4	8.4	91.1	100.0
공직선거법(제257조)	수	17	85	265	367
	비율	4.6	23.2	72.2	100.0
전체	수	59	468	1,137	1,664
	비율	3.5	28.1	6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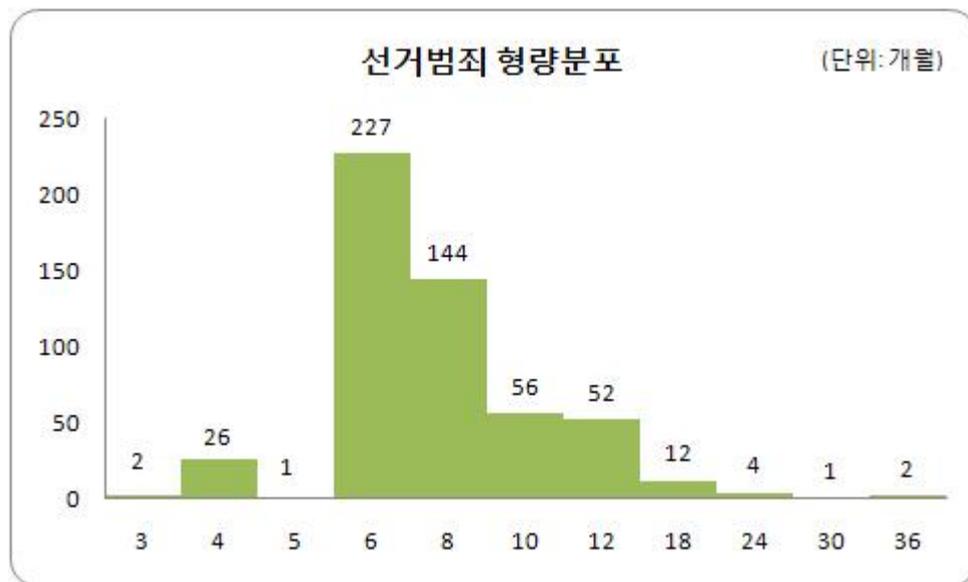
나. 징역형의 형량 분포

단위 : 명, %

구분		형량(월)											전체
		3	4	5	6	8	10	12	18	24	30	36	
공직선거법(제230조)	수	1	16	0	170	90	44	31	10	2	1	0	365
	비율	0.3	4.4	0.0	46.6	24.7	12.1	8.5	2.7	0.5	0.3	0.0	100.0
공직선거법(제250조)	수	0	0	0	4	10	1	1	0	0	0	0	16
	비율	0.0	0.0	0.0	25.0	62.5	6.3	6.3	0.0	0.0	0.0	0.0	100.0
공직선거법(제251조)	수	0	1	0	1	0	0	1	0	0	0	0	3
	비율	0.0	33.3	0.0	33.3	0.0	0.0	33.3	0.0	0.0	0.0	0.0	100.0
공직선거법(제254조)	수	0	0	0	1	0	0	0	0	0	0	0	1
	비율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단위 : 명, %

구분		형량(월)											전체
		3	4	5	6	8	10	12	18	24	30	36	
공직선거법(제255조)	수	1	6	1	23	6	2	1	0	0	0	0	40
	비율	2.5	15.0	2.5	57.5	15.0	5.0	2.5	0.0	0.0	0.0	0.0	100.0
공직선거법(제257조)	수	0	3	0	28	38	9	18	2	2	0	2	102
	비율	0.0	2.9	0.0	27.5	37.3	8.8	17.6	2.0	2.0	0.0	2.0	100.0
전체	수	2	26	1	227	144	56	52	12	4	1	2	527
	비율	0.4	4.9	0.2	43.1	27.3	10.6	9.9	2.3	0.8	0.2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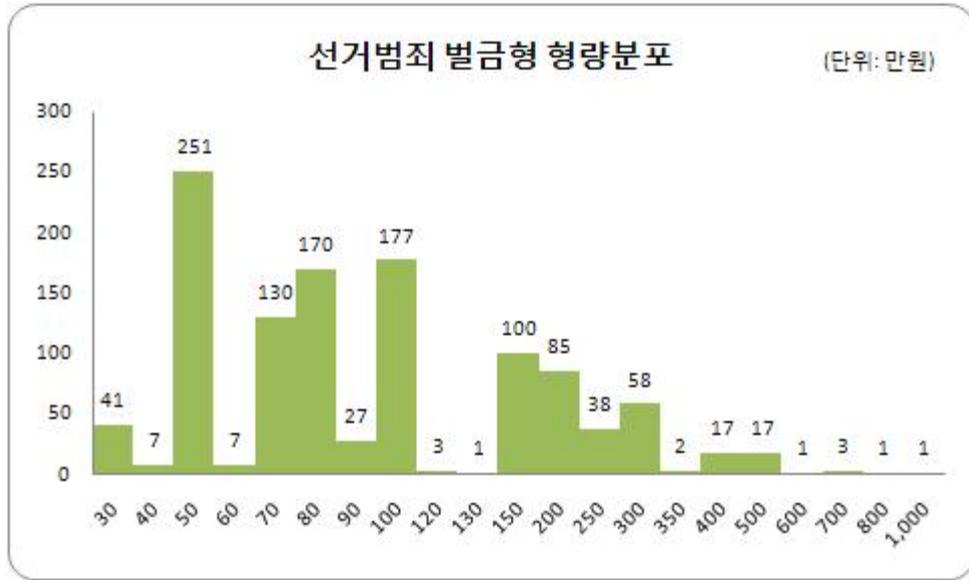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의 경우, 징역 4월 ~ 1년 6월 이하가 전체의 98.9%를 차지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제257조)의 경우, 징역 4월 ~ 1년 이하가 전체의 94.1%를 차지
-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의 경우, 징역 6월 ~ 1년 이하가 100%를 차지
- 후보자비방죄(제251조)의 경우, 징역 4월이 1건, 징역 6월이 1건, 징역 1년이 1건
-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254조)의 경우, 징역 6월이 1건

-
-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의 경우, 징역 1년 이하가 100%이고, 특히 징역 6월이 57.5%를 차지

다. 벌금형의 액수 분포

단위 : 명, %

구분		벌금액(만 원)										
		30	40	50	60	70	80	90	100	120	130	150
공직선거법(제230조)	수	4	0	77	0	21	13	3	46	1	0	22
	비율	1.5	0.0	28.8	0.0	7.9	4.9	1.1	17.2	0.4	0.0	8.2
공직선거법(제250조)	수	2	1	6	1	6	17	2	4	0	0	3
	비율	2.5	1.3	7.5	1.3	7.5	21.3	2.5	5.0	0.0	0.0	3.8
공직선거법(제251조)	수	0	0	1	1	3	5	0	3	0	0	7
	비율	0.0	0.0	4.5	4.5	13.6	22.7	0.0	13.6	0.0	0.0	31.8
공직선거법(제254조)	수	2	4	21	2	15	22	2	9	0	0	7
	비율	2.2	4.3	22.6	2.2	16.1	23.7	2.2	9.7	0.0	0.0	7.5
공직선거법(제255조)	수	25	2	116	1	54	65	11	64	1	1	28
	비율	6.1	0.5	28.3	0.2	13.2	15.9	2.7	15.6	0.2	0.2	6.8
공직선거법(제257조)	수	8	0	30	2	31	48	9	51	1	0	33
	비율	3.0	0.0	11.3	0.8	11.7	18.1	3.4	19.2	0.4	0.0	12.5
전체	수	41	7	251	7	130	170	27	177	3	1	100
	비율	3.6	0.6	22.1	0.6	11.4	15.0	2.4	15.6	0.3	0.1	8.8
구분		벌금액(만 원)										전체
		200	250	300	350	400	500	600	700	800	1,000	
공직선거법(제230조)	수	30	14	18	0	7	6	1	3	1	0	267
	비율	11.2	5.2	6.7	0	2.6	2.2	0.4	1.1	0.4	0	100
공직선거법(제250조)	수	2	17	11	1	2	4	0	0	0	1	80
	비율	2.5	21.3	13.8	1.3	2.5	5	0	0	0	1.3	100
공직선거법(제251조)	수	0	0	2	0	0	0	0	0	0	0	22
	비율	0	0	9.1	0	0	0	0	0	0	0	100
공직선거법(제254조)	수	9	0	0	0	0	0	0	0	0	0	93
	비율	9.7	0	0	0	0	0	0	0	0	0	100
공직선거법(제255조)	수	22	2	11	1	2	4	0	0	0	0	410
	비율	5.4	0.5	2.7	0.2	0.5	1	0	0	0	0	100
공직선거법(제257조)	수	22	5	16	0	6	3	0	0	0	0	265
	비율	8.3	1.9	6	0	2.3	1.1	0	0	0	0	100
전체	수	85	38	58	2	17	17	1	3	1	1	1,137
	비율	7.5	3.3	5.1	0.2	1.5	1.5	0.1	0.3	0.1	0.1	100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의 경우, 벌금 90만 원 이하가 44.2% (118건),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이하가 53.9%(144건)를 차지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제257조)의 경우, 벌금 90만 원 이하가 48.3%(128건),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이하가 51.7% (237건)를 차지
-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의 경우, 벌금 90만 원 이하가 43.8% (35건), 100만 원 ~ 500만 원 이하가 55%(44건)를 차지
- 후보자비방죄(제251조)의 경우, 벌금 80만 원 이하가 45.5%(10건),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이하가 54.5%(12건)를 차지
-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254조)의 경우, 벌금 90만 원 이하가 73.1%(68건), 벌금 100만 원 ~ 200만 원 이하가 26.9%(25건)를 차지
-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의 경우, 벌금 90만 원 이하가 66.8% (274건),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이하가 31.5%(129건)를 차지

V. 구체적 유형화 방안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가. 설정방식의 개요

1) 법정형의 분포

-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의 목적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를 두고 있음 -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범행은 감경

일반 목적 < 재산상 이익 목적 < 후보자 사퇴 목적 < 당선 사퇴 목적

- 일반인의 범행보다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범행을 가중 처벌
- 매수 및 이해유도 범행을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자를 가중 처벌

2) 대상범죄의 세부 내용

▣ 일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제1항 제1 ~ 5호)
 - 금전 등을 제공받은 자(제1항 제6호)
 - ※ 다만 제5호 위반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의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제230조 제1항 제6호, 제261조 제6항 제2호 - 과태료 대상)
 - 후보자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제2항)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이 주체
 - 제1, 2항을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자(제3항)
 -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을 운반한 자(제4항)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위반(제6항)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원 등 매수금지 위반(제7항)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7항 위반행위를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자(제8항)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제5항)는 제외

⇒ 과거 선고 사례가 없고,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7년 이하 징역)되어 있어 통일적 양형기준 설정이 곤란

■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 재산상 이익 목적의 금전 등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한 자 또는 제공받은 자(제1항)

● 제1항을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자(제2항)

■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한 자 또는 제공받은 자(제1항)

● 제1항을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자(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 제3항)는 제외

⇒ 과거 선고 사례 없고, 법정형도 징역형만 규정(10년 이하 징역)되어 있어 통일적 양형기준 설정이 곤란

■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 당선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한 자 또는 제공받은 자(제1항)

● 제1항을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자(제2항)

■ 당선무효유도죄(제234조) - 제외

● 제230 ~ 234조와는 행위유형이 완전히 상이하고, 통일적 양형인자의 추출이 곤란하며, 과거 처벌사례도 없음

■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 일반인의 방송, 신문 등 경영·관리자,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계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제1항)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의 제1항 위반행위(제2항)

나. 소유형 분류 방안

1) 행위 유형에 따른 분류

▣ 내용

- ① 일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② 재산상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③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④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

▣ 근거

- 공직선거법의 규정체계에 따라서 행위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법정형의 차이 등을 반영하기에 용이함

▣ 문제점

- 재산상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후보자나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 범죄 발생 빈도가 낮은 상황

2) 범행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내용

-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① 후보자 또는 당선인, ② 선거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③ 기타 행위자로 유형화하는 방안

▣ 논거

- 선거에서의 지위에 따른 불법의 차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음

-
- 당선무효 여부가 당선인(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관계자(벌금 300만 원 이상) 등 범행 주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당선무효 기준형을 고려한 형량범위 설정이 가능해짐

■ 문제점

- 범행의 주체에 따른 유형분류를 할 경우 범죄의 속성 및 법정형, 징역형 선고비율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범죄유형을 동일한 유형에 포섭하게 되어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결과 초래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5항 등을 제외하고는 행위 주체에 관계없이 법정형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양형기준에서 권고 형량범위에 차등을 두는 근거가 부족함

3) 범행의 상대방에 따른 분류

■ 내용

-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① 선거인(유권자)에 대한 범행, ② 후보자에 대한 범행, ③ 기관·단체 등에 대한 범행, ④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범행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

■ 근거

- 매수 및 이해유도의 상대방에 따라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므로 이를 유형분류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음

■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범행의 상대방에 따라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나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할 우려
- 단일한 유형 속에 범죄의 속성이나 행위 유형이 상이한 범죄들을 포섭할 경우 적정한 형량범위 설정이 어려울 여지 있음

4) 제공 · 수수된 금액에 따른 분류

■ 내용

-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뇌물범죄 등과 같이 제공·수수한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방안

■ 근거

- 매수 등에 제공된 금액이 클수록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 부패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는 뇌물범죄와 유사하므로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
- 예측가능성의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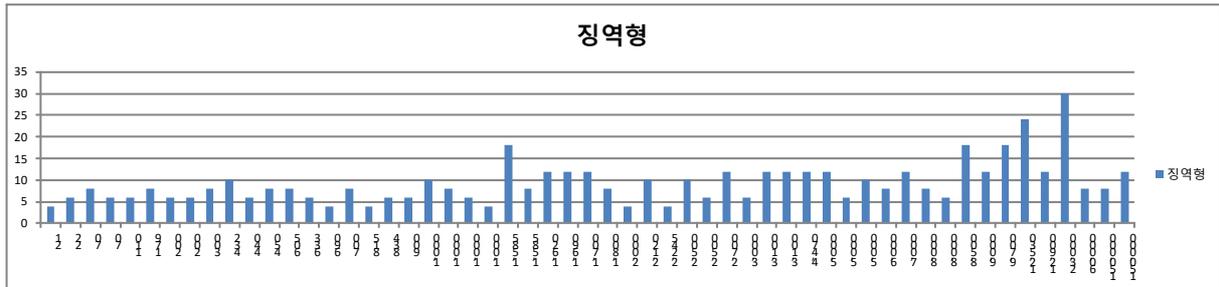
■ 문제점

- 뇌물범죄와 달리 제공된 가액의 차이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뇌물범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
- 선거범죄의 경우 제공된 금액의 다과(多寡)보다는 선거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급시기가 더 중요한 양형인자로 작용함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지역의 경제력 내지 경제규모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할 경우 선거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선 유무효에 대한 결정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 - 기준형이 당선무효형 이하로 권고되는 영역에서는 오히려 금권선거를 조장할 우려
- 실제 사례 분석 결과, 금품의 액수와 선거결과 사이에 비례관계가 나타나는 것도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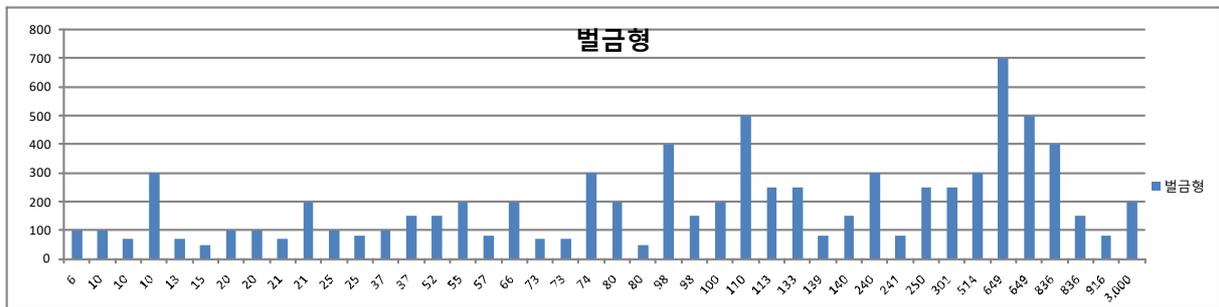
※ 매수 및 이해유도범죄 선고형 분석(2006. 1. 1. ~ 2011. 12. 31.까지)

선고된 사건 중 약 200건 분석 결과

▣ 징역형



▣ 벌금형



5) 검토 - 원칙적으로 행위 유형에 의한 분류 방안

-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죄를 행위 유형, 행위 주체, 범행 상대방 등 다양한 양형인자에 따라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세분하고 있어 통일성을 찾기 어려움
- 그러나 매수 행위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이 큰 순서에 따라 더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는 일관성을 유지함
 일반 목적 < 재산상 이익 목적 < 후보자 사퇴 목적 < 당선 사퇴 목적
-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행위 유형에 따른 분류 방안이 법정형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므로 공직선거법의 조문체계에 따른 선거범죄의 행위 유형에 따라 유형분류를 하기로 함
- 재산상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후보자나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 범죄 발생 빈도가 낮지만, 다른 유형

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일반 매수행위의 경우에는 본선거, 당내경선 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 여부에 따라, 그리고 범행의 주체가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인지, 일반인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크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다시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6) 금품제공행위와 금품수수행위를 구별할지 여부

-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 실제 사례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 대부분의 양형인자가 공통되므로 구별 필요성은 없음

다. 유형의 구분

▣ 구체적 유형분류 방안

- 제1유형 -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
- 제2유형 - 일반매수, 선거기간 중 금품운반,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 제3유형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제4유형 -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 제5유형 - 당선인 매수

☞ 일반인의 언론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1항)는 제2유형에,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언론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는 제3유형에 포섭

▣ 논거

-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므로 별도 유형화
- 재산상 이익 목적 및 후보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법정형이 거의 비

숫하므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

- 일반 매수행위(제230조)는 일괄해서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되,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행위는 특별가중인자로, 당내경선 관련 금품제공 행위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유형구분에 따른 법정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금품제공	제230조 제7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금품제공 지시 등	제230조 제8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제2유형	일반 매수	제23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금품운반	제230조 제4항	
	정당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	제230조 제6항	
	일반 매수 행위 지시 등	제230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제23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제4유형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제23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 ~ 3,000만 원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제23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 ~ 3,000만 원 벌금
	지시, 권유, 알선	제231조 제2항 제23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벌금
제5유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제233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유형

가. 설정 방식의 개요

1) 대상 범죄의 세부 내용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제113조)

-
- 대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

-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의 임·직원

-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115조)

- 제113, 114조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 기부를 받는 행위(제116조)

- 제113~115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한 자 ⇒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제261조 제6항 제1호 ·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므로)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3항의 위반자는 제외함

- ⇒ 정치자금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는 대개 법정형이 더 높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기부를 받은 자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

- 문제점

-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선거에서의 지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다만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는 달리 기부행위를 받은 자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에 비하여 낮은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기부행위를 받은 자 중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 대상(제261조 제5항 제6호)
- 기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검토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서 제외**

- 양형기준 설정 목적에 비추어 설정 필요성이 낮고, 실제 사안도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 대부분임
- 대부분의 과태료 처분으로 해결되고 실제 벌금형을 선고할 대상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 ⇒ 과태료 금액이 기부행위를 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달하여 처벌효과가 강력함

나. 유형의 구분

-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단일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2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기부의 지시·권유·알선·요구	제257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

가. 설정 방식의 개요

1) 대상 범죄의 세부 내용

▣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제250조 제1항)

-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제250조 제2항)

-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제250조 제3항)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등 행위를 한 자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등 행위를 한 자

▣ 후보자비방죄(제251조)

- 당선목적 또는 낙선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

2) 법정형의 방식

- 허위의 사실 공표,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큼
-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비하여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높음
-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행위는 감경된 형으로 처벌

나. 유형의 구분

▣ 구체적 유형분류 방안

- 제1유형 - 후보자비방
- 제2유형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제3유형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당내경선은 제2유형에 포섭(당선목적인 경우 특별감경)

▣ 논거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행위는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작량감경해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유형 분리
- 후보자비방과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행위는 행위유형의 차이가 크고 법정형에도 차이도 있으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
- 당내경선행위는 낙선목적행위를 기준으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당선목적인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 법정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후보자비방	제2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제25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제25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다. 여론조사 왜곡보도 금지 등 위반 범죄 [제1유형에 포섭]

1) 대상범죄의 내용

- 일반인 및 언론인의 선거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제96조 제1·2항)

2) 법정형 및 범죄 내용

- 법정형은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와 동일(3년 이하, 600만 원 이하)

-
- 범죄 내용은 후보자비방죄와 유사

3) 유형분류

- 법정형 및 범죄내용에 비추어, 제1유형으로 포섭

4.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유형

가. 설정 방식의 개요

1) 설정 대상 범죄의 선정 기준

▣ 국민적 관심 + 범죄의 발생빈도 + 양형기준 설정 적합성

- 당선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한정
-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에 국한
-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범죄에 국한

2) 포함 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254조)

-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제1항)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제2항)

▣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제1항)

-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제1호)
 - 공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제2호)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한을 위반한 자(제3호)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선임규정 위반(제4호)
 - 규격을 위반한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제5호)
 - 연설금지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제6호)
-

-
-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규정을 위반한 자(제7, 8호)
 - 교육적, 종교적인 단체 등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제9호)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위반(제10호)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제11호)
 -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위반(제12호)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제13호)
 -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제15호)
 - 행렬 등의 금지 위반(제16호)
 - 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제17호)
 -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위반(제18호)
 - 서신,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제19호)
 -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방법 위반(제1항 제20호)
-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제2항)
- 예비후보자홍보물 제한 위반(제1호)
 - 예비후보자공약집 제한 위반(제1의2호)
 - 선거벽보 등 제한 위반(제1의3호)
 -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제3호)
 -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위반(제4호)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위반(제5호)
 -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위반(제6호)
 -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위반(제8호)
-

▣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제3항)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제1호)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제2호)

3) 제외 범죄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4항) - 법정형 및 발생빈도 매우 낮음

나. 유형의 구분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제254조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제255조 제1, 2항
-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제255조 제3항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 법정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제254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일 선거운동	제254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제2유형	제255조 제2항 위반	제255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제255조 제1항 위반	제255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제3유형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255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VI.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1. 일반론

가. 개요

1) 권고 형량범위 설정시 고려사항

- 전형적 위험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를 설정할 필요

- 구분된 유형에 다양한 양형인자를 종합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
-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과거 선고 사건의 다수가 포섭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정하는 한편, 과거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 등을 토대로 종전 양형에 대한 규범적 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

2) 벌금형을 권고형량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 - 긍정

- 선거범죄는 다수의 사건들에 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고, 벌금형의 액수(당선자 100만 원, 선거관계자 300만 원)에 따라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음
- 선거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은 당선유무효를 가르는 벌금형의 액수가 선거별, 지역별, 재판부별로 편차가 존재한다는 데 있음
- 기존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양형의 편차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선거범죄에는 제한적이거나 당선 유무효에 관한 벌금형 선고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양형위원회 전체회의(2012. 3. 5.)에서 벌금형이 포함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회의가 진행된 바 있음

3) 징역형과 벌금형의 배치 방식

- ▣ 동일한 형량범위표 내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
- 종래의 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나누어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의 권고 형량범위표 내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적절히 배치하는 방법으로 형량범위표를 구성해야 함
- 현행 양형기준에서 중첩범위를 둔 이유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

형인자의 엄격한 구별이 어렵고 실제 발생하는 사안을 모두 포섭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완충 지역을 둬으로써 사안별로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음

- 선거범죄에도 형종간 형량범위의 중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필요함
- 선거범죄의 특성상 당선유무효에 관한 벌금형인지 여부가 국민적 관심이므로 별도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로 설정하기보다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
- 적절한 형량범위와 양형인자의 배치로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2. 구체적 형량범위 설정

- 위에서 본 일반론을 토대로 선거범죄의 유형 및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나.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 일반인의 언론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는 제2유형에, 후보자 등의 언론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는 제3유형에 각각 포섭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 원 - 300만 원	4월 - 1년	8월 - 2년
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200만 원 - 7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 법원의 선고결과를 보아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되어 당선 유효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적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상당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감경 영역에만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하되, 하한은 당선 무효형 이상을 권고할 필요
-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의 기본영역은 제2유형이고, 그 유형의 감경영역의 하한을 당선무효형부터 시작함으로써 엄정한 양형의 의지를 표명
- 기본유형인 제2유형의 감경역역의 하한을 100만 원으로 해도 형량 범위 특별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의 매수범죄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결과에 이룸
- 당내경선은 2005년 신설된 범죄로서 최근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 법정형이 낮게 규정된 점을 반영 ⇒ 감경영역에서까지 당선무효형을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당선유효형을 선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다.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유형 - 기부행위자에 한함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기부행위	50만 원 - 300만 원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8월 - 2년

-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죄의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형량을 보면 60% 이상에 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고, 의례적, 관례적 음식물 또는 편의 제공이 많아 권고 형량범위를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선고형량 분포도 징역형은 대개 징역 6월 ~ 1년 사이에 분포하고, 벌금형은 벌금 2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임

- 원칙적으로 기본영역에서는 기존의 선고형량의 다수가 포섭되도록 하면서도 후보자나 당선인의 경우에는 당선무효형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권고하고, 가중영역에는 징역형만을, 감경영역에서는 당선유효형의 선택이 가능한 벌금형만을 권고함
-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의 관련자(제230조 제2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하여 적정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유도

라.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유형 (후보자 및 선거관계인)

- ※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등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제1유형에 포섭
-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은 제2유형에 포섭(당선목적인 경우 특별감경, 이하 동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후보자비방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300만 원	6월 - 1년, 250만 원 - 400만 원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3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8월 300만 원 - 600만 원	6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1년 - 3년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실제 법원의 선고형량을 분석하여 보면 대다수가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은 물론이고 가중영역에서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 경험적 선고결과에 의하면 징역형은 가중영역에만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나,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죄는 그 사건의 수에 비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례가 많은 편임
- 전파력과 각인력이 강한 인터넷 등의 매체가 시민들 사이로 파고 들면서 규범적 그 영향력을 양형기준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 있음
- 법정형, 실제 선고사례 및 규범적 조정을 고려할 때 기본영역, 가중영역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배치하되,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

으로 하여 사실상 당선무효형만을 예정한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 사실공표의 감경영역에는 징역형을 배치

마.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유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거운동기간 위반	30만 원 - 90만 원	7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300만 원
2	선거운동방법 위반	50만 원 - 90만 원	70만 원 - 200만 원	4월 - 1년, 100만 원 - 400만 원
3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비교적 가벼운 절차 위반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서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도록 권고할 필요
- 법정형의 분포를 보면, 선거일 선거운동(3년 이하)과 주요 부정선거운동(3년 이하)의 법정형이 동일하나 선거일 선거운동은 사례가 거의 없거나 매우 가벼운 범죄만 존재. 사례가 많은 선거운동기간 위반(2년 이하)에 중점을 두고 형량범위를 설정함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권고 형량범위가 부정선거운동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다소 낮게 분포됨

VII. 선거범죄의 양형인자

1. 양형인자의 추출 및 분류 방법

-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고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하여 중요한 양형인자를 추출한 후 양형인자별로 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규범적 관점에서 양형인자가 양형에 미쳐야 하는 영향력의 크기를 평가하여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자와 그렇지 않은 인자로 구분하여 전자를 특별양형인자로, 후

자를 일반양형인자로 분류함

- 추가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통계분석결과를 참조함

2. 양형인자 정리

가. 매수 및 이해유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2, 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실제로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당과 실비 수준의 소액의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
- 다만, 선거운동원 등이 후보자로부터 선거인,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 행위나 기부행위 등을 위한 용도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를 제외한다.

 -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종전의 업무담당자나 주위의 다른 업무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부주의하게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협찬 내지 찬조, 장학금 기부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의 범행인 경우

 -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를 제외한다.

 -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에 기한 범행
 - 제3자가 주도하는 모임 등에 우연히 참석하였다가 친분관계 등에 따른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에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 공표된 사실의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공선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기재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적시된 사실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제1유형은 제외)
 - 단문 형식의 단순한 댓글이나 단순히 언론기사나 타인이 쓴 글을 인용하는 데 그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 소수의 유권자만을 상대로 한 경우
 - 게시 기간이나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의 불륜, 성매수, 부동산투기, 뇌물수수 등 비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살포 등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인터넷[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TV, 라디오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만, 인터넷의 경우 조회 수가 거의 없거나 게시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비공개 설정을 이용하는 등으로 게시자가 게시물의 전파가능 범위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 등 악의적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에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공표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보도의 정정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처벌불원이나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이나 선거 이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를 제외한다.

라.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제3유형은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극히 적은 경우
 - 설치한 유사기관의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 탈법배부한 문서 등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만을 상대로 한 범행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행위에 나아갔는데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 법령해석을 잘못된 결과 위법행위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선거일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공선법 제255조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원래 선거운동기간 내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국민운동단체의 임·직원 또는 대표자 등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

-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를 제외한다.

VIII. 집행유예 기준

1. 매수 및 이해 유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2, 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에 기한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자수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